

## 2016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2016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

### 주요 변경사항

가. (시험범위변경) 2015년 교육부 고등교육과정 변경으로 수학과목 세부범위 변경

- 기존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 변경 :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나. (결격사유추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임용결격사유의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추가

- 신설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 채용분야 및 시험과목

채용구분	채용분야	임용 계급	선발예정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계	남	여	
	총 계		276	249	27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분야	소방사	136	130	6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소 계		140	119	21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구급분야	소방사	64	48	16	
	응급구조 학과분야	소방사	20	18	2	
	구조분야	소방사	20	20	-	
	화학분야	소방사	5	5	-	
	건축분야	소방사	5	5	-	
	전기분야	소방사	5	5	-	
	구급상황 관리분야	소방사	1	-	1	
소방관련 학과분야	소방사	20	18	2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2. 시험 방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공개경쟁 5과목, 경력경쟁 3과목)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1문항 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10:00 ~ 11:40 (100분)], 경력경쟁채용[10:00 ~ 11:00 (60분)]
- 문제출제 : 충청남도 자체 출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공개경쟁 채용 또는 경력경쟁 채용의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소방 관련학과분야 제외),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음

과 목	출제범위
소방학개론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소방관계법규 * 소방관련학과 분야 제외	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소방관련학과분야의 소방관계법규, 영어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음

과 목	출제범위
소방관계법규	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영 어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함 (붙임 2)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및 도핑테스트

-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왕복오래달리기)
- 종목별 평가점수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에 의함(붙임 3)
-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의 50% 이상(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함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지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금지됨 (세부내용은 붙임 4 참조)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체력시험 응시 대상자 중 10% 이내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정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안내 : 붙임 5 참조
-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는 체력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른다.

**라.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인성·적성검사**

- 제출서류 :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시 준비서류 안내 예정
-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신체검사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인성·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마.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 (총점의 50% 이상)인 자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및 제5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년7월1일)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6월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의 요건 등)

1.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 모두 적용

○ 2016년도 충청남도의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 용 구 분	응 시 연 령	해 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5. 12. 31.
경력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6. 12. 31.

\*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은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경력경쟁 채용시험은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관련 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마. 면허(자격) 및 경력요건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시 기준일
  - 자동차운전면허증, 화학·건축·전기분야 관련 자격증,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경쟁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등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경력경쟁분야(분야별)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b>응급의료업무</b> 또는 <b>간호업무 경력</b> 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li> <li>-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li> </ul>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 근무한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구급분야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양호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응급구조학과분야	◇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
구조분야	◇ 군 특수전부대 <u>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u> (해당분야의 실근무경력으로서 공적서류로 증명되는 경우만 인정함) -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공적증빙서류에 의해 인정된 경력
화학분야	◇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공학기사 자격증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기분야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철도기사, 철도신호 자격증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건축분야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 후 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관련학과분야	◇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 한자 *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로 인증
구급상황관리분야	◇ 국기가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그 중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발표
○ 접수기간 : '16. 1. 20. ~ 22. * 취소기간 : '16. 1. 20. ~ 1. 29.	필기시험	2. 19.	3. 12.	3. 24.
	체력시험	3. 24.	4. 4.~6.	5. 2.
	신체검사	5. 2.	5. 9.	5. 16.
	서류전형	5. 16.	5. 20.	5. 27.
	면접시험	5. 27.	6. 1.~3.	6. 10.

※ 장소공고 및 합격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http://www.chungnam.net))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www.cn119.go.kr](http://www.cn119.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 4.5cm로 해상도는 100DPI이상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디지털 또는 스캐닝 사진 포함)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 가능)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단, 결제수수료 등 소정의 처리비용은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6. 가 산 특 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

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증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합니다.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면허)증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표 : 붙임 6 참조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2016년 3월 11일 24:00)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 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시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원서접수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MP3, PDA, 무선호출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마.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 각 단계별 시험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하는 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 아.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http://www.chungnam.net)) 「시험정보」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www.cn119.go.kr](http://www.cn119.go.kr)) 「채용정보」란을 참고하시고,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채용 관련 문의 전반 : ☎ 041-635-5562) 또는 총무과 고시팀(필기시험 관련 문의 : ☎ 041-635-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http://www.chungnam.net))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www.cn119.go.kr](http://www.cn119.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붙임 1]

###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의 발전 과정</li> <li>-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li> <li>-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li> <li>-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li> <li>-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li> </ul>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li> <li>-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li> <li>- 위험물 안전관리</li> <li>-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li> <li>-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li> </ul>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의 특징과 유형</li> <li>-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li> </ul>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li> <li>- 긴급구조</li> <li>-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li> </ul>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li> <li>- 연소의 조건 및 형태</li> <li>- 발화의 조건 및 과정</li> </ul>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의 정의</li> <li>- 연소 가스</li> <li>-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li> <li>-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li> </ul>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발의 조건</li> <li>-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li> <li>-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li> <li>- 폭연과 폭굉</li> <li>- 가스·분진·분해 폭발</li> <li>-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li> </ul>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 2]

**선택과목 특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46조의2제1항 관련)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text{응시자의 점수}-\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div\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times 10+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 3]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참조

[붙임 4]

##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 금지약물

####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sup>1)</sup>

#####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 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 4. 마약류 : 총 11종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 □ 금지방법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붙임 5]

## 도핑테스트 절차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안내

### □ 도핑테스트 절차

- 시료는 응시자의 소변으로 하고, 시료수집책임관 관리하에 소변 채취통에 90ml이상이 되도록 수집 한다.
- 응시자는 시료채취 용기를 직접 선택한 후, 시료수집책임관이 A시료병에 60ml, B시료병에 30ml의 양으로 나누어 넣은 뒤 밀봉하여 응시자가 직접 확인한다.
- 응시자가 시료채취 용기를 선택한 그 시점부터는 시료채취 용기는 응시자 또는 시료수집책임관 입회하에 다룬다.
- 시료채취용기의 관리번호와 성명, 응시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 개인식별 번호는 관련 서류에 기재하고, 응시자가 확인·서명을 한다.
- 시료수집책임관은 소변시료가 분석하기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채취용기에 남은 소변의 비중을 확인하고, 적정비중(굴절계 1.005, 시료스틱 1.01)이하인 경우에 응시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보관운송책임관이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된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충청남도예 서면으로 통보되며 분석결과 비정상(양성)이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의견제출시 :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 B시료분석 요청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할수 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2016년 5월 2일(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한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치료가 없어야 한다.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 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성명:..... 전공분야:.....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서명:..... 날짜:.....

#### 5. 응시자 서약

본인,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날짜:.....

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하여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후 재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6]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비율 분야	5%	3%	1%
자격증 (면허증)	소방관련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자동차정비,화공,위험물,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전기,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기기,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통신설비,가스,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인간공학,전기안전,화공안전,비파괴검사,방사선관리,원자력발전,에너지관리	소방관련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케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그린전동자동차,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생물공학,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전자,임베디드,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정보보안,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인간공학,화재감식평가,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원자력,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소방관련 건축,건축목공,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실내건축,거푸집,건축도장,도배,미장,방수,비계,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삭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천공기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케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계정비,승강기,전자부품장착,생산자동화,농업기계,설비보전,농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정비,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차체수리,화약류제조,화학분석,위험물,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철도전기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제어,전자,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카드,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기운용,정보보안,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통신선로,통신기기,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화재감식평가,방사선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급~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제1종 특수트레이더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3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 자격(면허)증(①), 사무관리(②)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에 기재)

[붙임 7]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교 연락처			응시자 연락처 (휴대폰)		
학교명		학과 (전공)		졸업 일자	년 월 일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2016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시험 공고에 기재된 \_\_\_\_\_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직)	성 명	(인)
	(전화)		

2016. . .

총(학)장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